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55
------	----

2014. 9. 22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년 9월 4일

나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5일

라. 상정일자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 
2014년 9월 22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 
의결(수정안 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조정실장 류경기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연구원의 독립성·자율성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 『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』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연구원의 독립성·자율성 강화를 위해 조례명과 목적을 개정(안 제1조)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4항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‘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’을 규정(안 제3조의2 신설)
- 위탁 규정의 ‘임의 규정화’ 등을 통해 위탁 발주 부서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원의 자체 경쟁력 강화 유도(안 제4조)

### 3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)

#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를 ‘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위탁’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,
- 현행 서울연구원 정관에만 규정된 ‘이사의 추천 및 임명’에 관한 사항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법조계, 언론계, 비영리시민단체 등으로 폭 넓게 확대하여 조례상에 명문화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연구원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(조례의 제명 및 안 제1조)

-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 1992년 출범한 뒤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으나,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자율성과 독립성을 살리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.
- 또한, 서울시정 연구 기반이 미약했던 설립당시와 달리 현재는

그간 축적된 연구원의 전문성과 역량에 걸맞게 위상을 정립하고,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- 이에 따라 연구원 설립 초기에 연구원의 ‘보호·육성’의 위주의 직접적인 운영정책에서 간접적인 ‘운영·지원’ 중심으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의 제명과 목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『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』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,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『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』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
- 이는 그 동안 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기위한 취지로 이해되며,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역량을 강화시키고 변화된 시대상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적 운영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.

## 다. 연구원의 '이사 추천 및 임명' 규정(안 제3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'임원의 선임' 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하고 있음.
- 이는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기존의 '학계·산업계 등'에서 '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)'까지 추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.

### 【 관련 규정 】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 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 
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 
③ 이사(이사장은 제외한다)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(이하 "당연직이사"라 한다)과 원장이 학계·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 또는 **대도시 시장이 임명**하는 사람이 된다.  
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- 서울연구원 정관  
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의직 이사로 구분하되, 다음 각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당연히 이사가 된다.  
1. ~ 3. (생략)  
② 임의직 이사는 원장이 학계,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.

- 이 같이 추천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것은 학계, 산업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.

- 그러나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연구계 또는 연구기관'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연구·조사의 우선 위탁 규정(안 제4조)

-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를 서울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음.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<u>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<u>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

- 이는 최근 민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'14.2.11.)됨에 따라, 동 연구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규정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어 임의규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음.
- 또한,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로부터 수행한 수탁과제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계약 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도 이 같이 서울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강행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.

< 최근 3년간 서울시와의 수탁과제 계약현황 >

[2013. 12월말 기준, 단위 : 천원]

구 분	2013년		2012년		2011년	
	건수	계약금액	건수	계약금액	건수	계약금액
계약 총계	48	7,466,168	51	9,954,253	26	6,893,096
공개경쟁계약	2	308,440	2	359,810	4	710,032
수의계약	46	7,157,728	49	9,594,443	22	6,183,064

- 이 같은 위탁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비 타 광역자치단체에 출연한 관련연구원에 규정된 위탁규정을 살펴보면, 타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, 충북의 경우처럼 우선위탁 조항이 전혀 없는 곳도

있으나,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대구, 인천, 대전, 경기도 4개 광역단체 출연 연구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강행규정으로 남아 있음.

< 타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한 위탁규정 현황 >

기관명	관계 법규	위탁규정 유무	규정
부산발전연구원	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	×	
대구경북연구원	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	○	강행규정
인천발전연구원	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	○	강행규정
광주발전연구원	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대전발전연구원	대전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강행규정
울산발전연구원	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경기개발연구원	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강행규정
강원발전연구원	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충북발전연구원	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	×	
충남발전연구원	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○	임의규정
전북발전연구원	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	○	임의규정
전남발전연구원	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경남발전연구원	경남발전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제주발전연구원	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	○	임의규정

- 한편, 개정안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발주 부서의 연구기관 선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, 연구기관 간 연구수주 공개 경쟁 추세에 따른 연구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임.
- 그러나 이 같이 ‘서울연구원에 우선위탁’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만으로는 연구원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기에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.



- 연구원이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경쟁력과 서울시민의 삶에 주력하기 위해 연구의 질 제고와 연구원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끊임없는 자구노력이 담보되어야 하며, 아울러 서울시도 연구원에 대한 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서울연구원의 독립성, 자율성 강화에는 찬성하지만, 개정안과 같이 서울연구원이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면 수주액이 줄게 되고, 예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?
 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연구기관 간 연구수주 공개경쟁 추세에 따른 연구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연구원의 경쟁 강화 부분은 연구원의 동의가 있었는지? 연구원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 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금년 2월 연구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음.
- 서울연구원의 독립성, 자율성을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 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재정적 독립방안도 고려하겠음.

## 5. 수정안의 요지

### 가. 수정이유

-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기존의 '학계·산업계 등' 에서 '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' 까지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,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연구계'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.

### 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연구계'도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범위에 포함함.(안 제3조의2제1항제3호)

## 6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 7. 심사결과 : 「수정안 가결」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)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5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9월 22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가.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기존의 '학계·산업계 등' 에서 '법조계·언론계·시민단체' 까지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,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연구계'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어 이를 수정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'연구계'도 이사를 임명할 때 추천범위에 포함함.(안 제3조의2 제1항제3호)

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중 “법조계, 언론계, 시민단체”를 “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『<u>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</u>』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</u>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,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『<u>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</u>』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-----.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〈<u>신 설</u>〉</p>	<p>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p>1. 학계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, 각종 학회 등</p>	<p>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2. 산업계 : <u>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</u></p> <p>3. 기타 : <u>법조계, 언론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</u></p>	<p>3. 기타 : <u>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</p> <p>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<u>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</p> <p>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<u>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</u></p> <p>2. <u>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</u></p> <p>3. <u>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</u></p>	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<u>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</u></p> <p><u>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	



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 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, 육성함으로써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학계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, 각종 학회 등
2. 산업계 :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
3. 기타 : 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

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

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”을 “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”로, “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”를 “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
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
3. 과제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
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『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』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을 보호,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『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』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계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, 각종 학회 등</li> <li>2. 산업계 :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</li> <li>3. 기타 : 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</li> </ol> <p>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</p> <p>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<u>연구·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<u>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</p> <p>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<u>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</u></li> <li>2. <u>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</u></li> <li>3. <u>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</u></li> <li>4. <u>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</u></li> </ol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) ① 서울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  
②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(자치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3조(출연금)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.

제3조의2(이사의 추천 및 임명) ①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서울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학계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, 각종 학회 등
2. 산업계 : 서울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

3. 기타 : 법조계, 언론계, 연구계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

② 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

2.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

3.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

4.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

② 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사업계획 등 승인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결산서 제출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

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고, 검사 등)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,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대한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